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

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20. 2022고단4323, 2023고단2264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1인

【검 사】정하은, 김용선(기소), 정인혜(공판)

【주문】

1

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